

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

의안 번호	회의 차수	회의 일자	제의자
60	26	1991. 12. 5	증재 김건

의안 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 개정

의결사항 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을 본임과 같이 개정한다.

제의관계 한국은행법 제7조  
법규조항

제의취지 농어촌지역의 농외소득원 확충과 저렴한 공장용지의 공급 확대에  
기여하는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 
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

< 참고사항 >

제의관계 법규조항

한국은행법 제7조

①

( 생 락 )

-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-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
④~⑥

( 생 락 )

(별 암)

「금융기관여신은용규정」개정(안)

현 행	개 정	비 고
제1조~제2조 ( 생 락 )	제1조~제2조 ( 현행과 같음 )	
제3조(여신의 금지) 금융 기관이 <별표>의 "여신금지부문"에 대한 여신을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불전전한 여신으로 본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0에 해당하는 여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.	제3조(여신의 금지) ( 현행과 같음 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1991년 11월말 이전에 지정된 농공단지개발사업관련 여신(1991년 11월말 이전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함)</li><li>○ 시행일자 명시</li></ul>
1~3. ( 생 락 )  <u>( 신 설 )</u>	1~3. ( 현행과 같음 )  <u>4. 「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사업관련 여신(1991년 11월말 이전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함)</u>	
제3조의2~제12조 ( 생 락 )  <u>( 신 설 )</u>	제3조의2~제12조 ( 현행과 같음 )	<p>부 칙</p> <p>이 규정은 1991. 12. 6.부터 시행한다.</p>